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02

제출년월일 : 2004. 6. 8.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이유

- 가. 공공복지 인프라를 강화하고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범운영 실시하는 사회복지사무소의 자체의 신설 등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나.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의 시행에 따른 기획감사실 분장사무중 혁신분권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사회복지사무소 신설

- 1) 사회복지사무소는 구본청 기구로 설치하여 사회산업국 다음에 두며, 소장의 직급과 사무소의 세부분장사무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안 제2조)
- 2) 사회복지사무소에는 복지지원과와 복지사업과를 두고 그 존속기한은 2006. 6. 30까지로 함(안 제6조의2 및 부칙 제2조)
- 3) 사회복지사무소장 분장사무(안 제6조의2)
 -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자활사업 등 공공부조업무에 관한 사항
 - 노인·장애인·아동·모부자·여성 등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
 - 기초생활보장 및 복지서비스 내실화에 관한 사항
 - 민간자원의 개발·연계 등 지역사회복지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나. 사회복지과 폐지

- 1) 사회복지사무소의 존속기간중에는 사회산업국의 보조기관중 “사회복지과”를 삭제하고 지역경제과, 환경청소과, 교통행정과를 둠(안 제6조제1항)

2) 사회산업국의 분장사무중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항”과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은
총무국의 분장사무로 하고 제6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분장사무는 삭제함
(안 제6조제2항)

다. 기획감사실 신설업무

혁신분권에 관한 업무 명시

3. 관계법령

- 가.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03조
-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국장, 실·과장의 직급 등)”을 “(국·소장, 실·과장의 직급 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구본청국장”을 “구본청국장·소장”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실·국의 설치)”을 “(실·국·소의 설치)”로 하고 동조중 “사회산업국”을 “사회산업국, 사회복지사무소”로 한다.

제4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혁신분권에 관한 사항

제5조제2항 각호중 제14호를 제16호로 하고 동항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항

15.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중 “사회복지과, 환경청소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를 “지역경제과, 환경청소과, 교통행정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호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취업알선 및 노사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사회복지사무소) ① 사회복지사무소에 복지지원과, 복지사업과를 둔다

② 사회복지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자활사업 등 공공부조업무에 관한 사항

2. 노인·장애인·아동·모부자·여성 등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

3. 기초생활보장 및 복지서비스 내실화에 관한 사항

4. 민간자원의 개발·연계 등 지역사회복지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6조의2에 의한 사회복지사무소의 존속기한은 2006년 6월 30일 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본문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사업과장”으로 하고 동항 제2호중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를 “노인복지팀장”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사하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본문중 “사회산업국장”을 “사회복지사무소장”으로, “사회복지과장”을 “복지사업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6항중 “여성청소년업무담당주사”를 “여성아동팀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본문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사업과장”으로 하며 동조 제2호중 “여성청소년업무담당주사”를 “여성아동팀장”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국장, 실·과장의 직급 등) ① 구본청 국장·실장·과장의 직급과 실·과의 사무 분장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생략)	제2조(국·소장, 실·과장의 직급 등) ① 구본청 국장·소장 ----- ②(현행과 같음)
제3조(실·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 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총무국, 사회산업 국, 도시국을 둔다.	제3조(실·국·소의 설치) ----- ----- 사회산업국 사회복지사무소 -----.
제4조(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은 다음 사항 을 분장한다. 1.~10. (생략) <u>〈신설〉</u>	제4조(기획감사실) ----- ----- 1.~10. (현행과 같음) 11. 혁신분권에 관한 사항
제5조(총무국에 두는 과) ①(생략) ②총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3. (생략) <u>〈신설〉</u> <u>〈신설〉</u> 14. 그 밖의 타 실·국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제5조(총무국에 두는 과) ①(현행과 같음) ②----- 1.~13. (현행과 같음) 14.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항 15.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 16. -----
제6조(사회산업국에 두는 과) ① 사회산업국 에 사회복지과, 환경청소과, 지역경제과, 교 통행정과를 둔다 ② 사회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복지, 생활보호, 각종 구호에 관한 사항 2. 노인, 장애인, 청소년보호 및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3. 여성정책 및 여성복지에 관한 사항	제6조(사회산업국에 두는 과) ① ----- -- 지역경제과, 환경청소과, 교통행정과 ----- ②----- <u>〈삭제〉</u> <u>〈삭제〉</u> <u>〈삭제〉</u>

현 행	개 정 안
<u>4. 취업알선, 직업안정 및 노동단체지도육성 및 노사운영에 관한 사항</u> <u>5.~15. (생략)</u>	<u>4. 취업알선 및 노사운영에 관한 사항</u> <u>5.~15. (현행과 같음)</u>
<p>〈신설〉</p>	<u>제6조의2(사회복지사무소) ① 사회복지사무소에 복지지원과, 복지사업과를 둔다.</u> <u>② 사회복지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680 666 1156 752">1.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자활사업 등 공공부조업무에 관한 사항 <li data-bbox="680 771 1156 856">2. 노인·장애인·아동·모부자·여성 등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 <li data-bbox="680 875 1156 961">3. 기초생활보장 및 복지서비스 내실화에 관한 사항 <li data-bbox="680 980 1156 1066">4. 민간자원의 개발·연계 등 지역사회복지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